

# 킨텍스 행사 안전관리지침

[담당부서: 행사지원팀]

2015.12.07. 제정

2021.04.21. 전부개정

2022.01.20. 개정

## 제1장 공통사항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킨텍스 전시홀, 회의실, 로비, 부대시설 임대기간 중(장치, 행사, 철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참관객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사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의 정의)** ① 현장관리는 킨텍스 지정등록업체로 한다. 기타 미 지정 분야의 현장관리는 용역을 수임받은 업체로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청부인을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처리 권한 및 책임을 갖는 자로, 현장관리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1명 이상의 현장대리인을 킨텍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0.>

1.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의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지정등록업체 소속 직원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수혜자

<개정: 2022.01.20.>

3. 기본부스 외 독립부스 등을 설치하는 전시디자인 설치업체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구조물에 대한 공사 일체(전기, 리깅, 방염 등)의 총괄 처리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신설: 2022.01.20.>

**제3조(현장대리인의 안전 및 방화관리 책임과 의무)** ①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사항을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2.01.20.>

② 현장대리인은 소화전 및 비상구의 위치, 가스전 전원스위치의 장소 등을 확인하여, 매일 폐장 시 화원(火源)을 철저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작업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킨텍스 전시장 회의실 운영규정, 전시장 운영요령 회의실 운영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을 숙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0.>

- ④ 현장대리인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통로 및 부스 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폐기물 전용 마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현장대리인은 전시 준비부터 철거 기간 내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담당매니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01.20.>

**제4조(지정등록업체 분야별 작업신고)** ① 작업신고는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장치 첫날 0시를 기준으로 72시간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리깅, 구조계산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7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매니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장치기간 내 현장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전시디자인 설치분야 현장대리인은 공사현황표를 해당 부스에 부착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2.01.20.>

③ 분야별 필수 작업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승인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표 개정: 2022.01.20.>

구분	신고내용	신고양식
전시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내· 외 및 로비 내 장치물 시공 도면 (평면도, 입면도, 조감도)</li> <li>○ 복층, 철골, 리깅, 강화 유리 공사 시 관련 기관 안전성 검사 완료 서류</li> <li>○ 재활용 목재(기본부스, 아트월&amp;우드월)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또는 한국소방기술연구원 방염성능검사결과보고서</li> </ul>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설비 세부 도면</li> </ul>	
급배수/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 위치 및 돌출 배관 라인 표시 도면</li> </ul>	
카펫/파이텍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부스 도면(자체시공 부스 포함)</li> <li>○ 시공 자재의 방염성능검사결과보고서</li> </ul>	
운수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업체 및 전시품에 대한 리스트(수량, 중량, 제원 등)</li> <li>○ 장비투입신고서</li> <li>○ 반·출입 계획 일정</li> </ul>	
지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게차, 리프트 현황자료(연식, 중량)</li> <li>○ 운전자 자격증(외부인력 투입 시 투입인력 자격증)</li> </ul>	
철거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계획신고서(장비, 인력, 위험물 철거 등)</li> </ul>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비업무 배치신고서</li> <li>○ (사후신고)경비근무일지</li> </ul>	
렌탈 (가구/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입 품목 리스트</li> </ul>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내 외 설치하는 모든 홍보물의 시공계획서</li> </ul>	별지 제 1, 2호
가스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안전공사 검사 승인 서류</li> <li>○ 부스배치도(시공위치)</li> </ul>	
Rigg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검토의뢰서</li> </ul>	
구조계산 및 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계검토산서</li> <li>○ (변경 시)구조변경 확인서</li> <li>○ (사후신고)감리보고서</li> </ul>	
방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소방기술연구원 방염성능검사결과보고서 제출</li> <li>○ (사후신고)소방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li> </ul>	

**제5조(작업시 공통 의무사항)** ① 행사장 내에서는 흡연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지정된 장소

(흡연부스 내)에서만 할 수 있다.

- ② 작업 시 킨텍스에서 정한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③ 행사장 구조물은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해야 하며, 벽면이나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과 비상구 등 소방설비, 비상구, 전기 EPS출입문 및 화장실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면 개방하여 노출 시공해야 한다.
- ④ 전시 부스 통로는 3m 이상으로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하고 통로 내에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전시품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행사장 통로 바닥에 최소 30m 간격, 최소 500mm x 500mm 이상 크기로 대피로 표시를 제작 부착하여 참가업체와 관람객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행사장 칸막이 보호선(노란색) 내에는 전시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호선 안쪽에는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없다.
- ⑥ 장치물은 사전 작업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매니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01.20.>
- ⑦ 행사장치물은 구조상 안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물로 시공해야 하며, 부스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계산 및 감리를 득하여야 한다.
- ⑧ 행사장치물 시공 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전시디자인설치 업체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⑨ 목재(각목, 각재류 포함), 천, 기타 방염대상 물품은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 이라한다.)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기관(관할 소방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성적서 또는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방염 도료는 백색 수성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 ⑩ 킨텍스는 소방시설법에 의거 문화 집회시설로 도료는 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일지라도, 유성이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을 포함하는 도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행사장 내에서는 수성 페인트를 포함한 어떠한 페인트 작업도 할 수 없다. <개정: 2022.01.20.>
- ⑪ 전시장 내·외부에서 시멘트 및 석면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할 수 없다.
- ⑫ 지정등록업체는 주최자 및 주관사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제한 사항에 대하여 참가업체에 사전 공지하여 민원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⑬ 지정등록업체는 행사당일 개문과 동시 시공부스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하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즉시 조치하여 참가업체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 ⑭ 트렌치 커버를 개폐하여 시공하는 경우 시공업체는 트렌치 내부에 이물질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⑮ 각 분야별 공사는 해당 분야 지정등록업체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고소작업 안전관리)** ① 전시장 내 고소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고소

작업 장비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2.01.20.>

② 고소 작업대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닫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01.20.>

③ 이동식사다리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의 경작업과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음 각호의 안전작업지침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01.20.>

1.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2. 사다리 작업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이상~2m미만인 경우,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 금지
3. 사다리 작업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2m이상~3.5m이하인 경우,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과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4.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수주한 용역은 반드시 지정등록업체가 수행하며, 하도급 및 명의대여, 명의도용은 금지한다.

② 지정등록업체는 킨텍스 관련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개정: 2022.01.20.>

**제8조(폐기물)** 행사장 내 발생한 공사 폐기물은 즉시 자체 수거해야 하며 킨텍스 폐기물 처리장이나 기타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설물 높이제한)** ① 구조물 및 전시 부스의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해석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구조물의 최대 허용 높이는 다음과 같다.

제1전시장		제2전시장			
1~5홀	회의실	6홀	7,8홀	9,10홀	회의실
12m	2.5m	7m	9m	12m	2.5m

② 행사장 천장트러스에서 하부로 내리는 구조물(현수막 등)은 전시장 바닥에서 6.5m 이상 이격해야 한다.

③ 제2전시장은 천장 화재 감지 센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H빔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한다

**제10조(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 제한)** ① 위험물을 행사장에 반입출 할 경우 위험물 반·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킨텍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위험물은 행사장 내에 반입할 수 없다.

② 위험물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③ 위험물 취급 제반 사항은 소방시설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01.20.>
- ④ 행사장 내에서는 킨텍스의 승인 없이 모든 화기를 취급할 수 없다.
- ⑤ 위험물의 취급, 보관은 킨텍스 담당매니저 및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전기기기 사용 제한)** 행사장 내에서는 전기톱, 전기 대패, 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등 전동공구 및 산소 절단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단, 행사장 내 콤프레서 사용 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 작업 전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일러, 용광로, 스토브 등 위험성이 높은 전시품은 작동할 수 없다.

- 제12조(전열기구 사용 제한)**
- ① 전열기구 작동 시 표면온도 40 ~ 50℃ 이상인 때에는 관람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책을 설치해야 한다.
  - ② 전시작동용 전열 기구는 목재로 된 진열대에 설치할 수 없으며 바닥으로부터 20cm 이상 높이의 불연성 진열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전기 취사구, 다리미 등 전열 제품 등에 인접한 벽면은 불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전열기구 사용 전시 부스 바닥에는 카펫이나 파이텍스, 부직포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⑤ 전열기구 전원선은 내열 전선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 ⑥ 모든 전열기구는 안전 스위치가 설치된 제품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 제2장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 제1절 전시디자인설치 분야

- 제13조(기본부스)**
- ① 외관상 변형, 파손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 ② 3m가 넘는 부분은 별도 안전한 조치를 하도록 있도록 구조 보강하여야 한다.
  - ③ 미관상 지장이 있는 부분은 칸막이로 시야를 차단하여야 한다.
  - ④ 구조상 흔들림이 심할 때는 보강하거나 버팀대 등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시스템 내부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변형이나 붕괴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구조물 이동 시 바닥이나 기 시설물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⑦ 구조물에 사용되는 전등의 결선은 전기공사로 판단하여 전기업체에 시공하도록 한다.
  - ⑧ 기본부스에 사용되는 합판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하여 국가가 정하는 기관(관할 소방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성적서 또는 결과통보서를 득해야 하며, 작업신고 시 관련서류를 제

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0.>

⑨ 시험성적서 또는 결과 통보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거짓 시료 제출이 적발되면 안전관리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해당 업체가 책임진다.

<신설: 2022.01.20.>

**제14조(독립부스)** ① 목재 공사는 사전에 승인을 득한 단순 조립 구조물에 한하여 공사 할 수 있다.

② 목재를 포함한 시트지, 벽지, 광고 현수막 천 등 행사장 내에 시공되는 마감재는 반드시 방염처리가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공을 위하여 화재 위험성이 혼합된 재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④ 화재 시 인체에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제품(스티로폼, 비닐계통 제품 등)은 일체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22.01.20.>

⑤ 전시구조물이 하중에 대한 구조계산이 필요한 중량물일 경우 사전에 담당매니저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⑥ 전시디자인설치 업체는 킨텍스의 승인을 받은 작업 일정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자재,물품 반입 및 적재는 할 수 없다.

⑦ 천장부분이 마감되는 공사에는 천장에 10㎡당 1개 이상의 자동 확산소화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유리공사)** ① 유리시공은 강화접합유리를 사용해야 하며 작업신고 시 인증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0.>

② 유리 구조물에 대한 작업신고 시에는 철거 및 반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0.>

**제16조(복층공사)** ① 복층 구조물 공사 시에는 반드시 구조해석 및 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받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층면적은 사용면적(바닥면적)의 1/2 이내로 하여야 하며, 초과 시에는 안전성 확인 후 승인된 경우만 작업할 수 있다.

③ 전시부스의 벽체는 1/2 이상을 개방시켜야 한다. 단, 전시부스가 전시품일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설치할 수 있다.

④ 복층계단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복층의 천장은 반드시 개방하여야 한다. 단, 전시부스 자체가 전시품으로 구조해석 및 방염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4조(독립부스) 제7항을 준용하여 천장 마감 할 수 있다.

⑥ 복층 출입구는 넓이 0.9m 이상으로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복층 내부에는 보행거리 10m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⑧ 복층 외벽 마감재는 경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 철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유리공사에 한하여 제15조(유리공사)제1항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제17조(철구조물 공사)** ① 철구조물의 경우 일정 자격(용접 등 관련법적용)이상 기능공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해야 한다.

② 철구조물을 운반할 경우 바닥, 벽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작업해야 한다.

③ 중량물이 가해지는 트러스나 보의 경우 KS 또는 ISO9000이상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자립구조가 취약한 구조물의 경우 사전에 협의 후 승인을 득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조경 및 조형물 공사)** ① 건초류, 스티로폼, 인조 잔디, 플라스틱, 비닐류 등 미방염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모래, 흙, 자갈 등을 사용할 경우 바닥에 보양을 철저히 시행한 후에 후속 공정을 해야 한다.

③ 조경시설물 공사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공사 할 수 있다.

**제19조(물 공사)** ① 물을 사용하는 공사는 사전에 누수 방지 계획 확인이 필요하다. <개정: 2022.01.20.>

② 물 공사에 대한 작업 신고 시에는 세부 도면과 시방서를 제출해야 하며, 물의 양이 5톤/㎡이 넘을 경우에는 하중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분수나 연못을 시공하는 경우 시공 10일 전에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0.>

**제20조(바닥공사(양카·볼트)공사)** ① 행사장 내 양카·볼트 공사시에는 설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벤트홀(6홀) 및 각 전시장 트렌치 상판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2.01.20.>

② 양카·볼트 공사 신청서에 설치 개수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설치 시에는 킨텍스의 작업시방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0.>

③ 양카·볼트 철거 시에는 외부업체 또는 킨텍스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외부업체를 통하여 원상복구 할 때는 킨텍스의 작업시방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0.>

④ 양카볼트 사용에 따른 바닥 원상복구 비용은 킨텍스 전시장운영요령 제18조(관리비), 제19조(관리비 예치)에 따른다. <개정: 2022.01.20.>

⑤ 원상복구 비용이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청구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제21조(놀이시설 공사)**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놀이시설 및 기구 운영 전 안전관리선임 등에 대해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서류를 킨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놀이시설 및 기구의 경우 반드시 구조계산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상 이용 가능 인원을 명기하여 안전운영요원과 함께 인원 수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놀이시설 및 기구 각각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무대공사)** ① 무대 공사 시 기둥 사이 너비가 8m 이상 또는 구조물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면 반드시 구조계산을 받아야 한다.

② 무대 단이 형성되어 무대높이가 1m를 초과하면 무대 하중 구조계산을 받아야 한다.

③ 무대(트러스 포함) 음향 장비 및 중량물의 구조물을 킨텍스 천장 H빔에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구조계산을 받아야 한다.

## 제2절 전기공사 분야

**제23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 시공 및 철거 시에는 반드시 전기가 차단된 상태인지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참가업체 부스에 시공하는 분전반은 방문객의 이동 통로, 화재 시 대피로, 밀폐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통로 및 부스 내 노출, 돌출되는 전기시설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마감 처리하고 안전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전기공사 사용 제품 및 시공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선, 퓨즈 스위치 등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안전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부스 조명시설 시공 시 1㎡당 100W를 초과할 수 없다.
3. 할로겐 조명은 열에 의한 과열로 코팅 부분이 손상되는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4. 부스에 설치하는 할로겐 조명은 외부 물체와 4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행사장 내 동력, 전열, 조명, 배선 케이블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60%이상으로 시공할 수 없다.
6. 220V 노출 콘센트 설치 시 비 접지 콘센트는 사용할 수 없다.
7. 행사장 내 배선공사 시 전기용량, 전압, 전류 관계없이 1V전선 및 PVC 비닐 코드 선은 사용할 수 없다.
8. 부스에 공급할 메인전원은 CASE없는 노 퓨즈 브레카(no fuse breaker)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9. 부스 내 전열 및 조명 메인 전원은 누전차단기(ELB)를 설치 시공한다.
- ④ 전기 공사업체는 행사 오픈 전일 12시(자정)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 전력공급을 하여야 하며, 행사 기간에는 주최자에게 행사장 내 전력 투입 여부를 확인하고 부스별 전원을 공급한다.
- ⑤ 트렌치 커버 및 흙 캡은 사용하고 난 후 반드시 이격이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⑥ 업체의 부주의로 행사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다.
- ⑦ 행사용 자재 철거 시 기존 시설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매니저와 협의한 후 사후처리하여야 한다.

### 제3절 가스시설 분야

**제24조(가스시설)** ① 행사장 가스시설 사용 및 설치 시에는 전시장 위치, 일정, 사용 기기 사양 등에 대해 시설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종료 후에는 담당매니저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체는 공사 15일 전에 가스안전관리공단에 공사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 7일 전에는 킨텍스(시설관리부서)에 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0.>

③ 행사장 내에서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용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매니저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가스 및 별도 연료로 인하여 화재 및 폭발을 일으키는 제품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없다.

④ LPG 설비 시공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일반 호스를 사용할 경우 3m 이내만 사용해야 하며, 3m 이상 시에는 Steel 배관으로 적법하게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누설 검지기 설치에 따른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선로를 구축한다.

⑤ 설치공사 마지막 날에는 기존 배관 속에 있는 공기를 불활성가스로 치환하여 기밀시험과 누설시험을 실시하고 결과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스 사용은 가스안전공사의 사용승인서 교부를 준공으로 가름한다.

1. 가스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에 승인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불활성 가스를 LPG로 치환할 경우 화기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용승인서 교부 받은 후에는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전시기간 중에는 시공업체의 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상주 관리하여야 한다.

1. 가스 취급 자격소지자 이상의 유자격자가 선임을 하여야 한다.

2. 안전책임자는 가스누설 감지기를 소지하고, 수시로 누설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점검체크를 서면으로 킨텍스에 제출해야 하고, 이상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자는 전시 기간 중 행사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 ⑧ 가스 사용업소에 안전관리사항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가스사용 업소에 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주위에 안전과 위배되는 물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 ⑨ 가스의 공급은 전시개장 10분 전에 하고, 가스공급 차단은 전시종료 10분 후로 한다.
  - 1.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작업자만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2. 취급자의 비상 연락망을 항상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⑩ 일과 시작과 종료 시에는 서면으로 일일 점검 결과를 킨텍스(관련시설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소와 주최자가 날인한 가스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한다.
  - 2. 철거 전 반드시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현장안전책임자 확인을 득한 후 안전하게 철거해야 하고, 철거 후 킨텍스 시설운영팀과 담당매니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⑪ 가스 누설 시에는 자동경보와 자동 차단 기능이 작동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이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⑫ 행사주최자의 행사보험에 반드시 가스 사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절 가구/비품 분야

- 제25조(가구/비품)** ① 가구/비품은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가구/비품 등의 손질을 위해 신나, 락카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행사장 내 반입할 수 없다.
  - ③ 가구/비품은 임대 행사장 및 킨텍스가 지정한 장소 외에는 적재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사전협의 해야한다.
  - ④ 행사장 내에서 가구 비품의 제작 또는 조립할 수 없다.
  - ⑤ 작업종료, 철거 후에는 가구/비품의 잔재물을 행사장 내에 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분실 및 파손 시 책임은 가구/비품 업체에 있다.

#### 제5절 카펫/ 파이텍스 분야

- 제26조(카펫/ 파이텍스 설치)** ① 카펫, 파이텍스, 타일카펫 등은 작업 전 시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성적서와 같이 담당매니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공 마감은 승인된 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철거 시 바닥보양제 및 자재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 ③ 시공 후 발생한 잔재물과 보양으로 사용한 비닐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④ 통로 바닥은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시공 시 연결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해야 하며, 들뜸이나 밀림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업체가 책임 진다.

## 제6절 광고사인물 분야

**제27조(사인물의 설치)** ① 사인물은 <별지 제 1, 2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01.20.>

- ② 행사별 행사장 임대 일정을 준수하여 설치 및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유료광고 사인물은 해당 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설치 및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신고된 작업내용과 달리 설치 사인물 사이즈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킨텍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01.20.>
- ⑤ 설치한 광고, 배너류, 안내사인물 등은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⑥ 행사장 내 찬장사인물은 H빔에만 시공하고, 시설물의 높이는 제9조(시설물 높이제한) 제2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절 급배수/ 압축공기(Air) 분야

**제28조(급배수/ 압축공기(Air))** ① 급배수/압축공기 시공 시 사용 제품 및 시공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전 반드시 공기나 급수의 청소를 시행한 후 설비에 급수를 결선하여야 한다.
  2. 급·배수의 시공 시 중간에 멀티밸브를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다.
  3.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급수배관 및 압축공기용 배관 자재는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배관을 연결하는 나사 접속 부위는 반드시 테프론 테이프로 기밀 처리 후 접속한다.
  6. 고압호스 연결 시 호스넛플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호스밴드는 ST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호스의 곡률 반경은 호스 직경의 6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8. 압축공기 호스와 전시품 기기 연결은 원터치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중간밸브는 비상시 신속히 개폐할 수 있도록 노출하여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배수배관을 통로에 노출 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배관 및 호스 등 접속이 끝난 후 반드시 누설검사를 실시한다.
  - ③ 배수관은 가능한 짧게 시공하고 배관 내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④ 배관의 가장 낮은 위치에 되수 밸브를 설치하여 급수를 되수할 수 있도록 배관 시공한다.
  - ⑤ 배관은 트렌치 내부로 매립하고 매립부에서의 이음매 접속은 피해야 한다.
  - ⑥ 급수관 및 압축공기 호스를 전시품에 접속하기 전에 중간밸브를 열어 배관 내 이물질 제거 후 접속해야 한다.
  - ⑦ 시공자는 전시기간 중 폐장 전 필히 메인밸브 또는 중간밸브를 닫은 후 퇴실한다.

- ⑧ 누수 및 하자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설치 업체는 관리 및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 ⑨ 현장대리인은 행사 기간 동안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수 설비 및 압축공기설비 공급 담당부서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⑩ 철거 후 킨텍스 시설운영팀과 담당매니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절 경비 용역 분야

**제29조(경비 인력투입)** ① 설치, 철거를 제외한 행사 기간 중에는 경비지도사 1인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경비지도사는 전시출발 배치되는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비지도사의 배치 및 업무는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② 인력 투입기준은 설치, 행사, 철거 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부 인력 기준은 전시장 운영요령 <별표 제1호>에 따른다.

③ 경비인력은 제2항에 정하는 인력 이상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자 배치 현황은 온라인 작업신고시스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행사 특성에 따라 인력의 배치 및 과업은 주최자와 경비업체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경비업체에 있다.

<개정: 2022.01.20.>

④ 장기 및 이벤트행사(유원시설업(3종) 면허를 취득한 행사)의 인력투입 기준은 1개홀 또는 반홀 구분 없이 3명으로 한다. 또한 동기간 타 행사 경비인력과 과업을 병행하여 근무할 수 없다.

⑤ 회의실 행사에 경비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목공·부스·전기장치 작업, 시험 등) 담당 매니저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30조(경비업무)** ① 단정한 복장 및 바른 자세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② 수시로 안전 순찰을 시행하여 이상 상황 발견 시 주최자 및 담당매니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고 출입자를 선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④ 중량물을 적재한 대형 화물 차량의 진입 시 안전 확보 및 동선 유도를 한다.

⑤ 행사 개최 기간에는 관람객의 질서유지와 친절한 안내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행사장 내 순찰을 수시로 시행하며, 화재, 도난 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⑦ 매일 특이사항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위치 및 인원을 익일 개장 전 까지 담당매니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일일 행사종료 후 행사장 내부 및 각 사무실의 화재예방 점검을 하고, 주최자 퇴실 확인 후 철수한다. 단 주최자의 잔업으로 퇴실하지 않을 경우, 최종 점검내용을 주최자 및 담당매니저에 보고 후 철수하여야 한다.

⑨ 철거 완료 후 전시장 출입구 폐문을 위하여 킨텍스 보안인력에게 인계하고 철수한다.

⑩ 제24조(가스시설) 제10항에 따른 가스 공사 철거 시에는 해당 내용을 일일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민원/사고조치)** ① 행사장에서 발생한 소지품 분실 신고 시 킨텍스 치안센터로 안내한다.

② 미야 발생 신고 시에는 주최자 측에 보고하여 행사장 내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후속 처리에 대한 상황은 종료 시까지 보고한다.

③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자 상태의 경·중에 따라 의무실 및 119에 신고하고, 사고자의 인적 사항과 사고내용, 시간 등의 정확한 경위서를 기록하여 주최자와 담당 매니저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E/L, E/S 등 내부 시설물 고장 시 방재실에 신고하고,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소화기 사용법, 화재 종류에 대한 진압요령 숙지하여 초기에 신속 대응을 하여야 한다.

⑥ 화재 발생 시 비상구 개방 및 비상 통로를 확보하고 방문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⑦ 킨텍스와 주최자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상황 보고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절 운송통관 분야

**제32조(운송통관)** ①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 제37조(초중량전시품 반입 제한)에 따라 5톤/㎡ 이상 전시품은 사전 킨텍스 확인 후 반입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0.>

② 전시품 하역작업 시 킨텍스 지게차 등록업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품 특성상 손괴 및 망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킨텍스와 협의 후 외부업체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01.20.>

③ 전시품 하역 후 발생한 보세박스는 사전에 담당매니저와 협의한 지정장소에 보관하되 운송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하역장 주차구획선 내 에는 물품박스, 전시품, 등을 적치 할 수 없다.

## 제10절 철거용역분야

**제33조(철거)** ① 전시부스 설치 및 철거작업은 전시회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임대 기간 내 끝마쳐야 하며, 특히 철거업체의 업무상 문제로 지연되어 차기 전시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은 철거업체가 진다.

② 철거 기간에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배치 배치되어야 하며, 사전에 철거부스(면적)별 현장대리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철거작업 전 반드시 압축공기, 급수, 전기 등이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④ 행사장 내·외부 목재 구조물 해체 시 바닥 충격에 유의하여 보양 후 해체작업을 하며, 노출된 못은 제거해야 한다.
- ⑤ 폐기물 집게차로 해체작업 시 안전사고 및 행사장 바닥을 포함한 시설물 훼손에 유의하여 작업한다.
- ⑥ 유리, 모래, 흙, 부스러기 등을 철거할 경우 반드시 바닥을 보양하고 시행한다.
- ⑦ 철거 시 어떠한 잔재도 남지 않도록 장치업체와 공동 책임하에 처리토록 한다.
- ⑧ 높이가 있는 구조물을 철거 할 경우 반드시 전 방위로 안전한 면적을 확보하고 안전요원 배치 후 철거하여야 한다.

## 제11절 리깅 분야

**제34조(리깅)** ① 리깅업체는 구조해석업체의 구조계산서에 따라 리깅 포인트를 부여받아 작업 진행을 하여야 한다.

- ② 킨텍스 천장 H빔 구조물 결속 시에는 반드시 규격 및 하중에 적합한 스텝벨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리깅업체는 구조물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각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담당매니저에게 보고한다.
- ④ 트러스 재질은 반드시 알루미늄 소재계열 60을 사용해야 한다.
- ⑤ 100kg이상의 구조물을 행잉 시에는 반드시 구조해석 안정성 검토를 통해 결속 위치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⑥ 트러스는 직선 길이 18m이상 설치 시에는 720mm x 560mm를 사용해야 하며 부착물 하중이 전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400mm x 400mm도 가능하다.
- ⑦ 트러스는 직선 길이 9m당 1point(행잉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부여하나 하중이 100kg미만인 경우는 18m당 1곳도 무방하며 하중이 300kg이상 시에는 9m의 직선이라도 2point를 원칙으로 한다.
- ⑧ 트러스 및 구조물 행잉 시에는 반드시 1ton체인 모터를 사용해야 하며 트러스와 체인 사이는 슬링벨트를 이용하며 트러스와 구조물을 반드시 볼트 너트로 고정 부착하거나 하중이 50kg이하인 경우에는 와이어를 이용한 고정부착도 가능하다.
- ⑨ 트러스에 조명기구를 부착할 때는 고정 볼트 이외에 안전 고리 핀을 사용 2중 걸이를 해줌으로써 2중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⑩ 총 전기 부하용량이 300kw이상 시에는 별도의 전기 안전 검사를 반드시 이행하고 킨텍스에 보고한다.
- ⑪ 모든 리깅 작업 시에는 작업장 내에 하단에서는 일체의 다른 장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안전요원이 상주하여 안전 유도를 해주어야 한다.

## 제12절 구조계산 분야

**제35조(구조계산)** ① 다수가 이용하는 구조물(계단식 의자, 장기행사 구조물 등), 높이 5m 초과 구조물, 복층구조물, 100kg 이상 리깅, 기동 사이 너비 8m 이상 무대 공사 등 킨텍스가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조계산 업체는 공사 완료, 행사 시작전 까지 “구조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조변경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20.>

③ 천장에 슬링벨트로 걸속시키는 구조물의 하부에 추가 부착 및 걸속 되는 모든 구조물(장치물)은 별도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절 방염 분야

**제36조(방염)** ① 소방시설법에 따라 전시 부스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는 방염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방염합판의 경우 백색수성 방염도료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를 방염처리 후 입고해야하며, 그 외 각목 및 각재류 또한 방염을 완료한 후 입고해야 한다.

③ 후처리 방염제품의 경우 담당매니저 입회하에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소방서 현장 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접수증과 방염성능심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성적서 또는 결과 통보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거짓 시료 제출이 적발되면 안전관리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문제는 방염업체가 책임을 진다.

## 제14절 지게차 분야

**제37조(지게차)** ① 행사장 내 진입하는 모든 지게차는 상시 정비하여 최소의 매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행사장내 진입하는 모든 지게차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모든 지게차 운전자는 면허증 소지자여야 한다.

③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을 위하여 행사장 내·외부에서 서행 운행해야 하며, 행사장 내에서는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조작, 급선회 등을 할 수 없다.

④ 지게차 운행 시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적재 화물에 가려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후진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⑤ 화물적재 상태에서 30cm이상으로 들어 올리거나 마스트를 수직이나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⑥ 지게차 화물 아래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⑦ 선회하는 경우에는 후륜이 바깥쪽으로 크게 회전하므로 사람이나 건물에 접촉 또는 충돌하지 않도록 천천히 선회하여야 한다.
- ⑧ 행사장 내 및 하역장을 주행할 때에는 보행자,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포크의 선단에 표시 및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⑨ 포크 또는 파렛트, 스키드, 균형추(Counter balance)등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할 수 없다.
- ⑩ 야간작업 시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에 지게차를 운전할 때는 전조등 또는 후조등, 그 밖의 조명을 이용하여 현장 전체를 최대한 밝게 한 후에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야간에는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해져서 운전자가 심하게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위에 있는 작업자와 장애물에 주의하고, 안전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 시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완전하게 걸고 변속 레버를 중립으로 한 후 포크 등을 바닥 면에 내리고 엔진을 정지시킨다.

## 제3장 현장관리 및 제재기준

### 제1절 작업 안전관리 위반 제재 기준

**제38조(공통적용기준)** ① 지정등록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킨텍스 전시장 회의실 운영규정, 전시장 운영요령, 회의실 운영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1.20.>

② 현장대리인만 상주하고 공사의 전부를 비등록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명의대여 및 도용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킨텍스는 해당 업체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필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킨텍스 청렴의무 사항 위반 시(선물, 금품, 향응 등 제공시) 본 지침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킨텍스 내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기관에 고발 조치 및 킨텍스 내부심사를 통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1.20.>

**제39조(안전관리 위반 제재의 종류와 기준)** ① 주의(벌점1) : 제38조(공통적용기준) 제1항의 킨텍스 내규를 위반한 경우

② 경고(벌점2)

1. 제38조(공통적용기준) 제1항의 킨텍스 내규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킨텍스, 주최자, 참가업체, 방문객 등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2. 제38조(공통적용기준) 제1항의 킨텍스 내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안전관련 법령 등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담당매니저 확인 없이 무단으로 시공할 경우  
<개정: 2022.01.20.>

- 3. 고객 (주최자 및 공사 계약 고객)과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접수되는 경우
- 4. 당해연도 주의 2회를 받아 누적 점수가 2점에 도달할 경우 경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영업정지(벌점3)

- 1. 제38조(공통적용기준) 제1항의 킨텍스 내규를 준수하지 않아 화재 또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사고의 규모가 등록보험금 또는 보증금 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 명의 대여 및 도용, 비등록업체의 전체공사 등이 적발될 경우
- 3. 영업정지 기간은 1~3개월로 하되 정지 기간은 킨텍스 내부심사(부사장, 실장 참여)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 등록 취소(계약해지)(벌점4)

- 1. 제38조(공통적용기준) 제1항의 킨텍스 내규를 준수하지 않아 화재 또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사고의 규모가 등록보험금 또는 보증금 총 금액을 초과할 경우
- 2. 당해연도 누적점수 4점에 도달할 경우
- 3. 담당매니저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부정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제40조(제재의 절차와 및 효력)** ① 지정등록업체에 대한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1. 사유서 제출 요구 공문 발송. 단, 제재의 범위가 주의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반 사실에 있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경우(위반 사진 등) 사유서를 생략할 수 있다.
- 2. 사유서 제출
- 3. 내부 검토 및 제재 수위 결정
- 4. 제재 결정 공문 발송

② 지정등록업체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효력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주의 : 주의의 효력은 당해연도로 한한다.
- 2. 경고 : 경고의 효력은 당해연도로 한한다.
- 3. 정지 : 정지의 효력은 당해연도로 한한다.
- 4. 해지 : 당해연도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및 익년도 12개월간 등록 불가하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삭제





